法 務 部

法 務 部

1. 總 括

지시사항 건수		완 료	관리종결	추 진 중		미착수	비고
				정 상	부 진		
총 계	34	25	_	9	_	_	-
단독주관사항	18	12	_	6	_	-	-
공통지시사항	16	13	_	3	_	_	_

2. 指示事項 目錄

o 完了事項

일런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39	05-34-01	공명선거 실현	1998.12.31
40	05-34-02	불구속 수사 확대	1999. 9.30
41	05-34-03	"북풍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1999. 3.31
42	05-34-04	한총련 조직에 대한 대응 철저	1999. 9.30
53	05-34-05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	1999. 9.30
85	05-34-08	법조비리 척결	1999.12.31
86	05-34-09	구조조정 방해, 해외 재산도피 등 엄정 대처	1999. 9.30
162	05-34-10	담합과 부당 내부거래의 근절	1999. 9.30
176	05-34-11	변호사법의 신속한 보완	1999. 6.30
203	05-34-12	사법개혁안 마련(사법개혁위원회 구성)	1999.12.31
222	05-34-13	부정선거 척결	1999. 9.30
504	05-34-17	출입국관리체제의 완비	2001.12.31
10	03-70-01	실업세부대책 수립	1999.12.27
48	08-70-03	홍보노력의 강화	2000.12.31
63	01-70-04	병무비리 추궁 철저	1998.12.31
137	01-70-08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2001. 6.30
138	08-70-09	수해복구 만전	1998. 8.31.
164	07-70-15	컴퓨터 2000년 문제	1999. 6.30.
175	08-70-16	공정한 인사행정	1999.12.20.
206	04-70-21	아파트관리 관련 비리 척결	1999. 9.30.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282	08-70-29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2000. 1. 6
304	03-70-32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2000. 4.20
332	08-70-34	공정한 선거관리	2000.10.14
336	08-70-39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2000.11.20
422	08-70-51	인사청탁 근절	2001.12.31

▲ '98 - '00년 완료사항은「1998년 -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책자 참조요망

ㅇ 管理終結事項: 해당사항 없음

○ 推進中인 指示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고
83	05-34-06	인권보장과 수사력 강화 병행 발전	정상
84	05-34-07	국가기강 확립	"
495	04-34-14	전월세 대책 마련	"
503	03-34-16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
505	05-34-18	불법체류자의 인권보장	"
506	05-34-19	남북평화협력관계의 적극 지원	"
277	08-70-28	불법도청의 근절	정상
519	05-70-39	여성인권 개선	"
525	05-70-58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철저	"

3. 完了指示事項

- 1) 出入國管理體制의 完備: 504(05-34-17)
-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시)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개항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나. 措置內容

- o 친절·신속한 출입국심사기반 확충
 - 심사인력 증원(413명→ 588명), 출입국심사대 증설(128대→288대) 및 3교대 24시간 운영체 제 확립
 - 김포공항 구 국제선 2청사에 도심터미널 운영, 국내선 환승객에 대한 출국심사 편의제공
 - 친절 및 외국어연수 강화
- ㅇ 출입국규제자 자동검색 시스템 등 운영
 - 2001. 3. 29. 인천국제공항 개항시부터 출입국규제자 자동검색시스템인 바-코드 판독기 288대 도입 운영으로 출입국 심사시간 대폭 단축
 - 입국규제자 검색시 관세우범자를 세관에 자동통보하는 시스템인 원스톱체크 시스템을 운 영함으로써 선량한 입국자 통관시간 대폭 단축

다. 事業成果

- ㅇ 친절 신속한 출입국심사 기반 확충으로 심사시간 대폭 단축
- 인천국제공항 24시간 개방 시스템에 맞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조직을 2국 15과 1실(정원 589명) 체제로 개편
- 자동규제자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바-코드 판독기 288대를 설치, 운영하여 출입국 심사시간 1분에서 30초로 대폭 단축
- 관세우범자에 대하여 입국심사시 세관에 자동통보함으로써 선량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
- 국내선 환승객에 대한 출국심사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심터미널 운영함으로써 출국자 편의 제공
- 친절 및 예절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출입국심사시 출입국자에게 친절히 응대함으로써 국가이미지 고양

共通 1) 各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强化: 137(03-70-08)

- 가. 指示內容(1998년 8월 31일, 제35회 국무회의시)
- ㅇ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ㅇ 경비절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ㅇ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제고
 - 교육훈련기관 정비
 - 법무연수원 교육효과 극대화와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통합하여 기획부로 개편, 청사관리 민간위탁 등으로 51명 감축
 -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안내 및 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42명 감축
 - 일반서무 및 교육운영 인력 최소화
- ㅇ 인센티브제도 도입
 - 인센티브제도 개요 및 세부시행 계획 산하기관 통보('98. 5. 21)
 - 예산절약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 ·흙막이공법 변경 등에 대한 예산절약분에 대한 성과상여금 1,570만원 지급
 - 정부재정의 효율성 증대
 - 공직사회의 경쟁과 창의성 제고

다. 事業成果

- ㅇ 법무연수원 등 조직정비로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제고
- ㅇ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경쟁과 창의성 제고

共通 2) 人事請託 根絶: 422(08-70-51)

- 가. 指示內容(2001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시)
- 국민의 정부 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아직도 인사청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이 인사의 원칙과 기준 확립
 - 승진·전보인사 예고제 실시
 - 전보인사시 순환보직제 실시
 - 보직관리기준 준수
 - 소속기관장의 평정서열 존중
- ㅇ '직렬별 인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인사심사 강화
 -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
- ㅇ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 핵심분야 전문직위 지정
 - 법조인력정책과 5개 직위
 - 근무실적 우수자 발탁 특별승진 실시
 - 소년보호직 6급 3명, 교정직 7급 1명
- ㅇ 인사청탁근절을 위한 본부직원 정신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1. 4.2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인원 : 310명
 - 소속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하여 특별 정신교육 실시

다. 事業成果

- ㅇ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 ㅇ 인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ㅇ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ㅇ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준수로 인사청탁 철저히 배격

4. 推進中인 指示事項

- 1) 人權保障과 搜查力 强化 並行 發展: 83(05-34-09)
- 가. 指示內容(1998년 7월 1일, 법무부 국정과제점검 회의시)
-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 수사력 강화를 양립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검찰이 양자의 병행발전에 진력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이 일신되도록 함과 동시에 아울러 법질서확립을 통한 사회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추가지시
 - 인원과 기구의 확대를 통해 검찰의 범죄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바람
 (1998년 11월 3일, 전국 검사장 접견시)
 - 불법감청,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1998년 11월 3일, 전국 검사장 접견시)
 - ㅇ 감청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기 바람 (1998년 12월 8일, 제57회 국무회의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사회병리현상의 심층분석을 통해 경제질서 문란사범 등 중요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정보 생산팀 구성·가동
- ㅇ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집중 점검(전국 58개청): 암행감찰 6회, 기강감사 2회 등
- ㅇ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 엄정 처리
 - 전국감찰담당(부장)검사회의(2001. 11. 24.)
 - 철야수사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개선
 - · 가혹행위 관련사건 감찰담당검사 직접 수사
- ㅇ 과학수사기법 개발 및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 마약지문감정센타(DSAC) 설치 추진
 - 마약감식기법 개발
 - 첨단과학수사장비 도입(2001.12.) : 컴퓨터식 거짓말탐지기 등 33종 788점 도입
- 불법감청의 근절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및 감독강화
 - '00.3. 전국 5개 고검에 수사감독관제를 신설, 일선청의 불법감청여부 감독
 - 불법도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56명 단속, 39명 구속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적극 지원, 2001. 12. 29. 개정법률 공포

- 심도있는 범죄정보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사범의 구조적·근원적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국민 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
- ㅇ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 자체감찰 강화
- 유전자정보은행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유전자감식기법 지속 개발
- 마약지문감정센터 운영을 위한 마약지문감정기법을 비롯한 각종 감정·감식기법 개발
- ㅇ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 ㅇ 사인간 불법감청행위 등 지속적 단속은 물론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최대한 억제

2) 國家紀綱 確立: 84(05-34-07)

- 가. 指示內容(1998년 7월 1일, 법무부 국정과제점검 회의시)
-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기강 확립활동의 중추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강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선량한 시민이 편안하게 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할 것
-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는 엄정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법 폭력시위가 잘못임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기 바람
 - '98. 5. 1. 폭력시위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공직비리 척결은 고위층 비리척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임.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공직비리 척결(부정부패사범 지속적 척결)
 - 조직적·체계적 부정부패특별수사활동 전개를 위해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설치·운영(99.9.17)
 - 부정부패사범 지속적 단속 (98. 1. 1.-2001. 11. 30.)
 - · 21,731명 단속(공무원 2,708명), 8,086명 구속(공무원 1,602명)
 - 공무워비리 집중단속
 - ·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비리(98. 1. 1.-2001. 11. 30.) : 345명 단속, 220명 구속
 - · 중하위공직자 부정부패사범(98. 10. 19.-2001. 11. 30.): 1,966명 단속, 1,139명 구속
 -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설치·운영 (2000. 2. 14.-2001. 2. 13.): 327명 단속, 159명 구속
 - 「병역비리 공동수사반」설치·운영 (2001. 4. 28.-2001. 9. 28.): 127명 단속, 53명 구속
- ㅇ 공안대책협의회 활성화 : 40회에 걸쳐 협의회 개최하여 민노총의 총파업 대책등 논의
- 전국 53개 검찰청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설치·운영
- 영동 화학무기 폐기시설 설치 반대 철로점거 농성자 등 직역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집단 행동사범 206명 구속, 1,898명 불구속 입건

- ㅇ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
-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폭력시위 주동자 및 배후 조종세력, 폭력·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단
- 운동권 학생·재야 등 외부 동조세력의 노사분규 현장 침투 철저 차단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신속한 정보교환 및 효율적 대처로 불법집단행동 조기 해결, 사회안정 확보
- ㅇ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민사책임도 철저 추궁

- 3) 傳·月貰 對策 마련: 495(04-34-14)
-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13일, 제10회 국무회의시)
- 최근 전월세 가격의 폭등, 과도한 월세전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월세 세입자의 법적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ㅇ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 및 보호금액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호대상을 특별·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에서 수도권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을 특별·광역시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에서 수도권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 1,200만원으로 인상함
 - 2001. 9. 15.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환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개정(2001, 12, 29.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등을 감 안하여 월세전환제한비율을 결정하여 시행령 개정 (2002. 6. 이전)

4) 經濟 再跳躍을 위한 法的 支援: 503(03-34-16)

-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시)
- o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경제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임.
- 벤처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큰 기업들이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강탈이나 다름없음.
 -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검찰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양면의 노력을 해야 함.
-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노사가 대화를 통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세계 경쟁을 이겨내고 서로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검찰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사 문제를 격려하고 또 필요한 규제도 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ㅇ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 국제통상전문검사들로 구성된 「국제통상법률지원단」을 정부내 로펌으로 활용, 정부 관련 부처의 통상협상을 다각적으로 지원
 - · 통상현안법률자문 88회, 국내대책회의 80회, 통상협상 및 국제회의 직접 참가 24회
 - ·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협약 연구」,「양자간투자협정연구」, 격월간지 「통상법률」 37~41호 발간
 - 국제통상법 분야의 외부전문가(전문변호사 및 전공교수)들로 「뉴라운드법률지원반」을 구성하여 WTO 농업·서비스 협상을 법적으로 자문하고 뉴라운드 예상쟁점 심층 연구
 - ·농업·서비스 협상 관련 국내회의 및 국제협상 33회 참가·지원
 - · 「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GATS 국내규제연구」 발간
 - 「수출중소·벤처기업지원변호사단」을 통해 법률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민간의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 제공
 - · 영문계약서 검토·작성, 분쟁해결안내 등 법률자문 246건 실시 (전년 대비 203%로 증가)
 - · 2001. 12. 그 동안의 자문사례를 종합하여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 지원사례집」발간
 - 경제전문TV방송에 기업법률 소개·해설 프로그램을 신설, 전문가들이 분쟁사례를 해설 하고 법률자문을 제공
 - · 2001. 2월부터 8월까지 매일경제방송(MBN)을 통해 「기업법률119」225회 방영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파일로 상시 시청 가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설치·운영(2001.12.1)
 -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비리 집중 단속 (2001. 1. 1.-2001. 12. 28.) : 4,326명단속, 2,053명 구속
- 불공정거래행위사범 단속: 264건, 930명 적발
-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범 처리 및 통지기준 시달(3.30.)

- 3. 3.~ 4. 30.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복제 사용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2,315개 업체를 점검, 878개의 위반업체를 적발
- 9. 1.~ 11. 30. 2002 FIFA 월드컵 상표 위조사범 특별단속(35명 입건)
- 2001. 1.~ 1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4.513명 입건(구속 1.456명)
- ㅇ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엄정 대처함으로써 확산 방지
 - 효성울산공장 불법파업 관련자 등 208명 구속, 1,244명 불구속 입건
- 악의적 임금체불업주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에 대하여도 법에 따라 엄단함으로써 노사분규 요인을 사전 제거
 - 2001. 3. 전국 검찰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지시
 - 불법도청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업주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업주 11명 구속, 1,086 명 불구속 입건

- 법무부의 국제통상법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분야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원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법률지원 증가추세에 따라 지원인력 보강을 계속 추진
- ○「WTO보조금협정 연구」, 「WTO 분쟁해결제도 이행문제 연구」, 「지역무역협정법 연구」, 「국제금융채권양도협약」. 「국제재판관할협약 연구」등 국제협약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 발간 예정
- ㅇ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 척결
- ㅇ 불공정거래행위사범 단속철저
- ㅇ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철저
- 2002. 1. 1. ~ 6. 30. 월드컵축구대회 상표위조사범 2차 특별단속 실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신속한 정보교환 및 효율적 대처로 불법파업 조기 분쇄, 산 업평화 정착 유도하여,「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 확립
- ㅇ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 있는 법 집행으로 '신노사문화'정착 유도

5) 不法滯留者의 人權保障: 505(05-34-18)

-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시)
- 우리나라를 거쳐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매우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음 불법체류자를 강제송환하게 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동안은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ㅇ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2001년 체불임금 3,025건(금액 27억 8천만원) 등 총 4.831건의 고충처리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 전담변호사를 지정,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 72명(구조금액 2억6천만원)에 대하여 법률구조
 - 전국 검찰청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담 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2001. 7. 4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지시,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사범 576명 입건처리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인권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고충해결방안 토의
 -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2001. 2월 이디오피아인 1명에 대하여 최초 난민인정
- ㅇ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
 - 주한 외국공관에 보호외국인 면담활성화를 통보하였으며 중국, 나이지리아 등 8개국 영사 가 외국인보호소 등을 16회 방문하여 자국 보호외국인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 외국인보호실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개 사무소의 외국인 보호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설치
 - 고충이 미해결된 보호외국인 149명에 대하여 강제출국을 유보하고 보호일시 해제조치
 - 출국비용이 없는 강제퇴거대상자 408명에 대하여 국비 강제퇴거집행으로 자국 조기송환

-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여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 청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적극 수용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이내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포, 3월 시행예정)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인정 허가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내 취업 활동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후 3월 시행예정)

- 6) 南北平和協力關係의 積極 支援:506(05-34-19)
- 가. 指示內容(2001년 3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시)
-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해야 함.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ㅇ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법적 지원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작성 완료, 북한과 협의 중
 - 남북간 4개 경협합의서를 '특수한 조약'으로 성격을 규명, 국회동의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 2001년 6월 임시국회에 동의안 상정
 - 우리측「중재규정」연구, 작성 중
- ㅇ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법적 지원
 -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형사사건처리, 남북간 육로출·입경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행합의서(안) 연구 중
- ㅇ 이산가족 관련 법적 문제 해결
 - 2001. 7. 통일부의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친족·상속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보완 중
- ㅇ 통일법무 관련 연구 및 자료집 발간
 - 2001년 5월 「독일통일 10년의 법적 고찰」 수정판 발간
 - 체제전환국 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인「베니스위원회」관련 자료집 발간 작업 진행 중

다. 向後 推進計劃

○ 통상업무인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자문과 병행하여, 체제전환국 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창설 10주년에 즈음하여 관련 자료집 발간에 주력할 예정

共通 1) 不法盜聽의 根絶: 277(08-70-28)

- 가. 指示內容(1999년 9월 21일, 제37회 국무회의시)
- 국민의 정부에서 도·감청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ㅇ 보도되고 알려진 내용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이는 진실을 분명히 설명해야 함
- ㅇ 불법도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한 줄여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불법도청에 대한 지속 단속
 - '99.9. 일선지검에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지시 시달
 - 불법도청장치 판매사범 등 56명 단속, 39명 구속
 - 전담검사를 지정, 각청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지속적 단속 실시 **사인간 도청등 통신비밀보호법관련사범 단속강화('99.1.-'01.11.): 784명 단속
- ㅇ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최소한도의 범위내로 제한
 - 적법절차 준수 지시 시달
 - '99. 9. 긴급감청억제 특별지시
 - '00.2. 통신비밀보호법 관련업무 철저지시
 - '00.6.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특별지시
 - · '00.6.「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개정·송부
 - '01.8.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 철저준수 지시
 - · '01.9.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개정·송부
 - 감청남용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 매월1회 각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
 - '00.3. 전국 5개 고검에 수사감독관제를 신설, 일선청의 불법감청 여부 감독
- 도·감청실태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 반론 보도 청구
 - ·2000. 9. 6자 조선일보의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 e-메일도 불법검열"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 10.7자에 정정보도
 - 매반기 발표하는 정보통신부의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에 수사기관의 감청실태가 정확히 보도되도록 사전협조 철저
- ㅇ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적극 지원
 - 2001.12.6.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기간축소,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본인통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1.12.2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 공포(2002. 3.30.시행예정)

- ㅇ 사인에 의한 불법도청행위 등 지속적 단속
- ㅇ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 보호 철저
- 정기 사무감사 및 통계분석 등으로 사전·사후감독 철저

共通 2) 女性人權 改善: 519(05-70-39)

- 가. 指示內容(2001년 4월 18일, 여성부 업무보고시)
- 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ㅇ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강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추진
 -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권 신설 ※ 2001. 12.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여성부, 법원행정처) 결과 검토
- 법무연수원에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신설
 - · 교육목표 : 여성관련범죄 수사능력 제고 및 수사절차상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식 함양
 - 교육대상 :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 6-9급 공무원
 - 교육기간 : 6일
 - · 교육내용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법 해설 등 ※ 2001. 10. 22. 10. 27. 교육 실시(인원 : 77명)

다. 向後 推進計劃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의 타당성 검토 후 입법 추진

共通 3) 2002年 월드 3 大會 準備徹底: 525(06-70-58)

- 가. 指示內容(2001년 5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시)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2002년 월드컵 한·일 출입국공동위원회 구성·운영('99. 3. 9.)
 - 서울, 동경에서 7차례 회의개최, 대회참가자 출입국편의제공 및 훌리건대책 등 공조방안 혐의
 - · FIFA 임원 등 대회관계자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 · 한·일간 이동시 대회관계자의 AD카드를 사증에 갈음
 - 인천공항↔나리따공항간 출입국심사관 상호 파견, 사전입국심사 실시
- ㅇ 국익위해자 입국기도 봉쇄
 - 위·변조여권 감식기법 향상을 위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및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식전담반 편성·운영
 - 대테러 및 위·변조여권 감식 순회교육 2회 실시
 - 국제 테러분자 3,030명 입국규제, 위·변조여권소지자 5,420명 적발, 입국목적불분명자 20,683명 입국불허(2001. 12. 31 현재)
- ㅇ 대테러활동 및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 월드컵 출입국안전대책활동지침 산하기관 시달
 - 9.11. 미국테러사태 이후 출입국관리 대테러 종합상황반 운영
 - 입국심사 및 체류외국인 동향조사활동 강화
- ㅇ 국제협력 강화
 - 환태평양 출입국관리 정보회의 개최, 미국, 카나다 등 10개국과 불법입국 정보자료 신속 교환체제 구축

- o 대회참가자의 출입국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심사대 지정·운영
- FIFA임원, 선수 등 대회참가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발급
- 한·일 사전 입국심사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
- 법무부 입국심사과 및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전대책반 운영, 대회참가자의 안전 지원